

제37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 안 처 리 결 과



장 성 군 의 회

심사결과

연번	의안 번호	의안명	심사결과
1	2663	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수정가결
2	2664	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	원안가결
3	2665	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	수정가결
4	2666	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	원안가결
5	2667	장성군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	원안가결
6	2668	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7	2669	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8	2670	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9	2671	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10	2672	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원안가결
11	2675	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	원안가결

주요내용

1. 장성군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- 제안이유
 - 상위법 「국민제안 규정」 제5조에 의거 제안 자격 범위 확대를 통한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.
- 주요내용
 - 제안자격 범위 확대(제1조 ~ 제7조)
 - (현행) 장성군민 (개정) 장성군정에 관심있는 자
 - 제안의 종류(제4조)
 - (현행) 군민제안 (개정) 국민제안
- 의결결과 : 수정가결
 - 주요 수정사항
 - 현행 조례 제1조(목적) 중 ‘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45조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78조에 따라 장성군민과’ 를 ‘장성군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’ 로 수정

2.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보고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출자 : 장성군수(기획실)
- 제안이유
 - 장성군, 함평군, 영광군 각 3개군 합의에 의해 「전라남도 서북 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」를 폐지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○ 협의회 개요

- 명 칭 : 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
- 구 성 : 3개 군(장성·함평·영광)
- 추진기간 : 2014년 ~ 2017년
- 추진목적 : 생활권별 지역자원의 공동활용 등을 통해 주민의 광역적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

- 주요내용

- 지역행복생활권 구성 및 공동 협약 체결 : 2014. 2.
- 2015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발굴 : 2014. 2.
- 지역행복생활권(농어촌생활권) 사업 공동 추진
; 생활권 치매거점 병동 사업('14~'15)
※ 장성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내 치매전문거점센터 건립
; 재난재해 공동 시설장비 및 보관창고 지원사업('15~'17, 함평군-영광군)

○ 폐지사유

- 2017년 이후 회의 미개최로 협의회 존치 필요성 약화
 - 「전라남도 서북지역 행복생활권 협의회」구성 3개 군 폐지 합의
 - 2024. 09. : 행복생활권 협의회 존치 여부 의견 조회(함평 → 장성, 영광)
 - 2024. 10. : 행복생활권 협의회 존치 불필요 의견 회신(장성, 영광 → 함평)
 - 2024. 11. : 3개 군 행복생활권 협의회 폐지 합의
- ※ 함평군('24. 12.), 영광군('25. 03.)폐지 완료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3.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관광과)
- 제안이유

○ 장성군 관광문화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
재단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·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.

■ 주요내용

○ 재단의 설립 근거 및 법적 형태 명시 (제3조)

- 장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민법상 재단법인으로 규정하고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 추진

○ 재단의 주요 사업 범위 규정 (제4조)

- 문화정책 기획, 축제·관광상품 개발, 문화유산 보존, 관광마케팅, 전문인력 양성 등 문화·예술·관광 전반을 아우르는 12개 사업 수행

○ 재정 운영 및 출연금 사용 근거 마련 (제6조~제8조)

- 군 출연금, 자체 수익, 수익사업 등으로 재정 구성 / 군은 예산 범위 내 재정 지원 가능

○ 조직 구성 및 임원 임명 체계 정립 (제9조~제11조)

- 이사장(군수), 상임이사 포함 이사 및 감사 구성 / 임원추천위원회 운영, 이사회 설치 및 의결구조 명확화

○ 군의 관리·감독 및 위탁 사무 명시 (제13조, 제15조, 제16조)

- 군수는 업무 위탁·대행 가능, 필요 시 검사·감사·시정 요구 / 위법 시 출연금 반환 및 제재 가능

○ 재단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 규정 (제17조~제18조)

- 해산 시 잔여재산은 장성군에 귀속되며, 공익사업 또는 유사 목적의 법인에 활용 가능

■ 의결결과 : 수정가결

○ 주요 수정사항

- 장성군 관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내용중 근거법령인 「장성군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추가 수정하는 내용
- 안 제5조 제2항 중 “재단의 정관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

-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.” 중 “군수와 협의해야 한다” 를 “군수와 협의하여야 하고, 그 결과를 장성군의회 (이하 “군의회” 라 한다)에 보고하여야 한다.” 로 추가 수정하는 내용
- 안 제10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로 하며, 제10조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 인사·조직 운영기준에 근거하여 제1항에는 이사회 임원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하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제1호에는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4명, 제2호에는 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하고 제2항에는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, 추천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. 로 신설
 - 안 제10조 신설안에 따라 안 제9조 제5항은 “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” 를 “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” 로 수정
 - 안 제15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2항을 “군의회는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4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업무·회계·재산으로 한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 할 수 있다.” 로 추가 및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

4. 장성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

▪ 제출일자 : 2025. 10. 2.

▪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
▪ 제안이유

-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

의료·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·연계하여 제공하는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 장성군 노인 의료·돌봄 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○ 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목적 (안 제1조)

-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자에 대한 보건의료와 장기요양·돌봄에 관한 지원이 통합적으로 연계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 유지·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

○ 군수의 책무(안 제3조)

-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

○ 돌봄 통합지원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(안 제4조)

- 군수는 지역계획을 매년 수립·시행하도록 규정함

○ 통합지원 사업 추진(안 제5조, 제6조)

- 군수는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보건의료·요양·돌봄 분야의 서비스 확충 및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 관련 서비스를 규정함

○ 의료 등의 통합지원 기반 마련(안 제8조~제11조)

- 지역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 설치하고 통합지원 관련 정책 및 지역계획 수립을 심의할 통합지원협의체 운영, 통합지원 사업 추진 전담조직의 설치·운영을 규정함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5. 장성군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■ 제출일자 : 2025. 10. 2.
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- 제안이유
 - 본 조례는 아동·청소년·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사항이 대상자별로 세분화된 개별 조례로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고 실효성이 저하되어,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「장성군 아동·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」 폐지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6. 장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- 제안이유
 - 여성친화도시의 기본계획 수립·시행, 연구개발 등에 관한 제안·조정·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 규정함으로써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조문 정비하고자 함.
- 주요내용
 -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구성 신설(안 제40조 제1항 ~ 제3항)
 - 여성친화도시 실무협의체 기능, 구성, 위원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
-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7. 장성군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제출일자 : 2025. 10. 2.
- 제 출 자 : 장성군수(가족행복과)
- 제안이유

○ 장성군 삼서면 공중목욕장 준공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■ 주요내용

○ 별표 문구 변경 (별표 1 명칭 및 위치란)

- (현행) 장성군 공중목욕장 /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

- (개정) 북이면 공중목욕장 / 장성군 북이면 사남북길 14

삼서면 공중목욕장 / 장성군 삼서면 해삼로 1138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8. 장성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제출일자 : 2025. 10. 2.

■ 제 출 자 : 장성군수(건설과)

■ 제안이유

○ 중소벤처기업부의 개선 권고에 따라 소하천 점용료 관련 조항을 신설·삭제·개정하여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○ 점용료 인상률 상한을 연 5%로 신설(제3조제6항)

○ 분할납부 횟수를 연 12회로 개선(제5조제2항)

○ 하천수사용 및 배수점용료 징수 항목 삭제(별표1)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9.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제출일자 : 2025. 10. 2.

■ 제 출 자 : 장성군수(지역개발과)

■ 제안이유

○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개정사항을 반영

하고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개선하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-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재공고·열람 절차 신설
- 개발행위허가 제외대상 및 기준 명확화
- 시장정비사업구역 건폐율·용적률 완화
- 농공단지 및 생산녹지지역 내 건폐율 완화
- 자연녹지·농림지역 등에서의 건축 가능 범위 확대
- 용어 변경(‘분뇨·쓰레기처리시설’ → ‘자원순환 관련시설’)
- 공동위원회 위원장 임명 방식을 ‘군수 임명 또는 위촉’으로 변경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0. 장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■ 제출일자 : 2025. 10. 2.

■ 제 출 자 : 장성군수(산림편백과)

■ 제안이유

-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제4항 개정
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 조성·관리를 하는
경우 비용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- 가로수 조성·관리 행위의 부담금 납부기간 명시(제10조제9항
신설)
- 미납 시, 징수절차의 근거 마련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

11. 2025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

■ 제출일자 : 2025. 10. 24.

■ 제 출 자 :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

■ 제안이유

- 2024. 11. 21. ~ 2025. 11. 20.까지 추진한 각종시책과 현안사업, 예산집행상황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 실시.
- 잘된 사항은 더욱 발전시켜 추진토록 지원하고, 미흡한 사항은 시정·개선함으로써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.

■ 주요내용

- 「지방자치법」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
- 「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」 제2조

■ 의결결과 : 원안가결